

[일련번호 : 4]

양 천 구

주 의 요 구 및 통 보

제 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기간만료 운송사업자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기준 준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7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임대료 최저보유 허가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또는 제9조의2(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법 제3조 제7항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 면적 등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사업 전부 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표1]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라.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 1차 :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 허가취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 중 차고지 최저보유 면적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차고지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독촉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 총 202건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미이행에 대한 독촉(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허가기준 미충족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차고지 기간만료 운송사업자 현황_부서 별도 통보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차고지 임대기간 만료로 운송사업자 허가기준이 미달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 또는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의 자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